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582,222,113 | 17,466,663 |
| 일반회계 | 576,521,252 | 17,295,638 |
| 특별회계 | 5,700,861 | 171,026 |
| 기타특별회계 | 5,700,861 | 171,026 |
| 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3,380,872 | 101,426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20,000 | 600 |
|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| 924,398 | 27,732 |
| 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 | 110,546 | 3,316 |
|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| 1,100,058 | 33,002 |
| 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 | 164,987 | 4,950 |

제 2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